#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0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안도걸 · 정태호 · 최기상

오기형 · 김영진 · 김태년

진성준 • 황명선 • 박홍근

임광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또한,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함.

그 밖에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

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안 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안 제76조의22)
  -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 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 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 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 제93조 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중 "병원"을 "병원 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업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를 "비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으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

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 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당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각 목"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1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 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9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를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 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 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 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제5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 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 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거래 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
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	산입)
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5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에</u>	위반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	<u>을 이유로</u>
는 공과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②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	
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	
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	
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	
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ļ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라. (생 략)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 • 마. -----병원 등-----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1) ~ 13) (생 략) <신 설>

바. (생 략) 2. (생략) ③ ~ ⑥ (생 략)

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 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 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

1.		 	 		 	 	 	 	 	
	_	 	 	_	 _	 _	 _	 	 	

가. ~ 라.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1)부터 13)까지의 병 원이 설립한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제28조의 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 협력단

바.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 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 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 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 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 저 한 과세)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 (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있다.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
	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	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	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	<u>상</u>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	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급
	에 산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	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
	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생략)
-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 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 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 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 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 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 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 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3. 4. (생략)
- ③ ④ (생 략)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

1. (현행과 같음)
2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배정되고,
0 4 (귀레리 키스)
3.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 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다.

<신 설>

행과 같음)
4
소득금액
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u>이월된 금액</u>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
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
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 1. <u>이월된 초과배당금액</u>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 저 공제할 것

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
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
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
<u> 니한다.</u>
<u>⑥</u>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
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라 한다)
<ol> <li>이월공제배당금액</li> </ol>
2. <u>이월공제배당금액</u>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 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 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천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3선 7천 소약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u>투자·상생협력</u> 촉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천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0신덕천 소박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천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3선극된 소프	금액의 100분의 24)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여	계산한다. <u>&lt;단서 신설&gt;</u>

- 1. · 2.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u>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u>다만, 직전 사업</u>
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
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
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
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
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
<u>해당 각 호의 구분</u>
<u> </u>
,
1
,
1
1

따른 방법 가. ~ 다. (생 략) <u><신 설></u>

#### ③ ~ ⑤ (생 략)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
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
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
- 연도인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

### 1. ·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 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 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 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 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을 계산한다. 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 을 계산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따른 방법

#### ③ ~ ⑤ (생 략)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 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 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 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 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

-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 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 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 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 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 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 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 자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② (생 략)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u>외국법인</u>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 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
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
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u>4</u>
<u>외국법인(제3항에 따</u>
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u>&lt;삭 제&gt;</u>

③ 외국번이이 국외투자기구륵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국외투자기구

<신 설>

<신 설>

### <삭 제>

-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 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 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 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 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 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 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 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 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 세 · 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 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 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 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신청) ①	
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
	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u>다.</u>
신청) ①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u>사업소득</u>	
	<u>사업소득</u>

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 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⑦ (생 략)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 · 보관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7조에 따라 신고가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 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 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 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의 제출) ① 「가상자산 이 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
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
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u>세무서</u>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 저 대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 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2. (생 략) <u><신 설></u>

세무서
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u>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u>
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
태료)
<u>,</u>
· 1.•2. (현행과 같음)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u>가</u>
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